



건축법 시행규칙 개정(인허가시 구조계산서제출)

1 개정이유

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 22993호, 2011. 6. 29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건축

허가 시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며,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,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 주요내용

가.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 조정(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)

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함.

나. 건축신고 시의 제출서류 추가(안 제12조제1항제1호)

건축신고 시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, 평면도 외에 입면도,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,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

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.

다.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대상 명확화(안 제14조제5항)

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함.

라. 우수 단열공법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(안 제43조제1항)

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.

3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0. 12. 17. ~ 2011. 1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강화 1건(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중앙건축위원회) ① 법 제4조제2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(이하 “중앙건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(중앙건축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건축허가신청등) ① 법 제11조제1항·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(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허가권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의3. (생략)</p> <p>2. 별표 2의 설계도서(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,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). 다만,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건축허가신청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건축신고)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(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.</p> <p>가.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: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·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</p>	<p>제12조(건축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배치도·평면도(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)·입면도·단면도 및 실내마감도</u>,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<u>건축계획서·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및 구조도(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)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나. 다. (생 략) 2. ~ 4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</p> <p>제12조의2(용도변경)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,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13조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배치도·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(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</p>	<p>나. 다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의2(용도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.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</p> <p>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발급하여야 ----- .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가설건축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.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----- 발급하여야 ----- . -----</p> <p>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발급하여야 ----- . -----</p> <p>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</p>	<p>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----- -----</p>
<p>제40조(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) ① (생략) ②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고,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40조(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공작물축조신고)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(이하 “공작물등”이라 한다)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. 1. 2. (생략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41조(공작물축조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----- ----- 발급하여야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3조(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)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. 1. 2. (생략)</p>	<p>제43조(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)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----- -----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층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----- -----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</p>